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 재활용시장 불안이 심화됨에 따라 1회용품 등 플라스틱 사용의 저감 및 플라스틱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1회용품 규제대상을 확대하고(안 제10조),

재생원료 사용제품 표시 및 공공기관 의무구매 등을 도입하여 재활용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33조의2, 제33조의3 신설)

아울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등 기존 법률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보완점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제29조 개정)

3. 주요내용

가. 플라스틱 용기의 타 재질 전환 규정(안 제9조의6, 제41조 개정)

“일정 규모 이상의 플라스틱 제품·용기 수입·판매 사용자에게 플라스틱 제품·용기의 수입·판매 비율에 관한 목표를 설정.”

나. 1회용품 규제대상 확대(안 제10조)

“숙박업(객실 50실 이상)을 규제대상 업종으로 추가하고, 장례식장은 세척시설만 갖춘 경우도 규제대상에 포함하며, 음식물 제공·판매·배달 시 불필요하게 제공되는 1회용품의 사용규제 근거를 마련함.”

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분담금에 처리비용 추가(안 제29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분담금 산정요소를 현행 재활용 비용 외에 처리비용까지 확대함.”

라. 생산자책임재활용 포장재의 두께, 색상, 포장무게비율 기준 신설(안 제9조의2)

“현행 생산자책임재활용 포장재의 구조와 재활용 용이성 기준 외에 두께, 색상, 포장무게비율 기준을 신설함.”

마. 재생원료 사용제품 표시 및 공공기관 의무구매(안 제33조의2, 제33조의3)

“재생원료를 사용할 재활용제품에 재생원료 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표시된 제품을 지자체에서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토록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재생원료”란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제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한 원료로 만든 것을 말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의2(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포장재의 재질·구조·두께·색상·포장무게비율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은 제9조제1항의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 이외의 사항으로 한다.

제9조의3제1항 중 “재질·구조 및”을 “재질·구조·두께·색상·포장무게비율 및”으로 한다.

제9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6(포장재의 재질별 사용비율) ①환경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 중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제품·용기를 판매하는 자에게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용기와 그 외의

원료를 사용한 제품·용기의 비율에 관한 연도별 목표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플라스틱 중에서 회수 재활용 비율이 높다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질은 플라스틱 사용량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대상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질별 제품·용기의 사용 비율을 연도별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질별 제품·용기의 사용비율이 목표에 미달한 자에게 일정 기간을 부여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경우”를 “경우(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회용품은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5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또는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접객실에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경우를 말하며,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자가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의 문상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9조 후단 중 “비용”을 “비용, 처리 비용”으로 한다.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재생원료 사용제품의 표시) ①재생원료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용기의 생산·사용자는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그 비율을 제품·용기에 표시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으로부터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확인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재생원료의 사용비율 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세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3(품질표시제품의 공공기관 의무구매)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4조의2의 규정에 따른 재생원료 표시제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목과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제품의 공급이 부족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의무구매실적을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의 의무구매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은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치단체 장에게 재정적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41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9조의6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3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삭 제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2.	“재생원료”란 재활용가능	
			자원을 이용하여 제품의 제조	
			에 사용하기 위한 원료로 만	
			든 것을 말한다.	
10. ~ 17. (생 략)		10. ~ 17.	(현행과 같음)	
제9조의2(포장재의 재질·구조 기		제9조의2(포장재의 재질·구조 기		
준) 환경부장관은 포장재의 재		준)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		
활용이 쉽도록 하기 위하여 재		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포장폐		
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		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하고,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		이 고시하는 포장재의 재질·구		
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그 기		조·두께·색상·포장무게비율		
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 관한 기		
		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환		
		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포장재질		
		에 관한 기준은 제9조제1항의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 이외의		
		사항으로 한다.		
제9조의3(포장재의 재질·구조 평		제9조의3(포장재의 재질·구조 평		
가 등) ① 환경부장관은 포장재		가 등) ① -----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이하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라 한다)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신설>

재질·구조·두께·색상·포장 무게비율 및 -----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의6(포장재의 재질별 사용비율)

①환경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 생산자 중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제품·용기를 판매하는 자에게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용기와 그 외의 원료를 사용한 제품·용기의 비율에 관한 연도별 목표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플라스틱 중에서 회수 재활용 비율이 높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질은 플라스틱 사용량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대상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질별 제품·용기의 사용 비율을 연도별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질별 제품·용기의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2. (생략)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4. 5. (생략)

<신설>

사용비율이 목표에 미달한 자에게 일정 기간을 부여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

1. 2. (현행과 같음)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5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4. 5. (현행과 같음)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또는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접객실에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경우를 말하며,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자가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의 문상객에게 음식물을

6. (생략)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

2. (생략)

3.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생략)

③ (생략)

제29조(분담금 등)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제16조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결정하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

-----.

1. -----

----- 경우(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회용품은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2. (현행과 같음)

<삭제>

3. (현행 제4호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29조(분담금 등) -----

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운영위원회를 구
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담금 산정기준은 재활용 용이
성, 재활용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신 설>

<신 설>

----- 비용, 처리 비용 -----
-----.

제33조의2(재생원료 사용제품의
표시) ①재생원료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용기의 생산·사용자는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그
비율을 제품·용기에 표시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으로부터 재생원
료 사용비율을 확인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③재생원료의 사용비율 확인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세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3(품질표시제품의 공공
기관 의무구매) ①특별자치시
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
수·구청장은 제34조의2의 규
정에 따른 재생원료 표시제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목과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제품의 공급이 부족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의무구매실적을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의 의무구매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은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치단체 장에게 재정적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 (생략)

<신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41조(과태료) ① -----

1. 2. (현행과 같음)

3. 제9조의6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략)

4. ~ 16. (생략)

③·④ (생략)

-----.

1. ~ 3. (현행과 같음)

4. ~ 16.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연 락 처	(044) 201 - 7386